

■ 제4장 이용계약

제07조(이용계약내용)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.

①계약목적 :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.

②계약기간 :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.

③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,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, 장기요양 급여비용, 비급여 사항, 개인정보보호, 계약의 해지,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.

④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,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,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류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.

⑤계약의 해제 :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,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(보호자)는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,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수급자(보호자)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한다.

⑥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

-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.
-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.
-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,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.
-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.
-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, 입·퇴소 절차,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.

제08조 (이용비용 및 수납)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금천 동네방네 돌봄SOS서비스의 관련규정을 따른다.

①월이용료

-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금천 동네방네 돌봄SOS서비스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.

구 분	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	인지지원
재가급여 월한도액	2,512,900	2,331,200	1,528,200	1,409,700	1,208,900	676,320

구 분	수 가 (단위 : 원 / 회당)							
방문요양 돌봄(일시재가)	30분	1시간	1시간 30분	2시간	2시간 30분	3시간	3시간 30분	4시간
	17,450	25,320	34,120	43,430	50,640	57,020	63,530	70,080

* 4시간 초과 금액에 대한 수가 및 야간 휴일에 대한 수가는 노인장기와 돌봄의 수가 계산방법에 따른다.

구 분	수 가 (단위 : 원 / 회당)		
방문목욕	목욕차량 이용 (차량내 목욕)	목욕차량 이용 (가정내 목욕)	목욕차량 미이용시
	88,980	80,230	50,100

구 분	수 가 (단위 : 원 / 회당)							
돌봄(동행지원)	30분	60분	90분	120분	150분	180분	210분	240분
	8,400	16,800	25,200	33,600	42,000	50,400	58,800	67,200

②본인부담금

- 일 반 이 용 자 :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%
-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: 무료
- 의료급여수급권자, 소득,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

:

장기요양급여비용의 6%, 9%

- 돌봄SOS서비스 : 돌봄SOS서비스센터 제공의뢰서에 의한다.

③그 밖의 이용부담액

-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%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 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.
-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요양보호사와 이용자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.